

의안번호	2215800
의 퇴 인	정점식의원
회 답 일	2026.3.24.
추계번호	26C7464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원 등 5년간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(안 제48조)	100	-	-	-	-	100	20

주: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추후 사업 세부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8조 (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)	○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식품 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다만,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 야 한다.(제1항 단서 신설)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8조 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)	○	○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1) 제정안 재정수반요인별 기존 수행 사업 목록을 [참고자료]에서 확인할 수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한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유류, 이유식 등 영유아용 식품의 경우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고시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
 - 어린이용 식품은 별도의 식품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나, 「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HACCP 기준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
 - 다만, 개정안은 영유아 및 어린이용식품 일체에 대한 식품별 HACCP 기준 마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식품 유형별 분류와 HACCP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필요함
- 추가재정소요는 식품 유형 개편 및 HACCP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추계 첫 해에 1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사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
 - “글로벌 스탠더드 해썹 기준 업그레이드 방안 및 평가체계 마련 연구”(2024)에 3,900만원 소요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